

전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단19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3.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 고,
나.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1. 3. 29. 접수 제3175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C에게 대출을 하여 지급 받지 못한 대출금에 대해서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5588호 대여금 소송을 하여 2014. 5. 29. 'C은 주식회사 D에게 187,608,83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27.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D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2021. 5. 20.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1. 6. 1.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21. 3. 25. 증여받아 2021.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3.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1. 3. 29. 접수 제31750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가 4,050만 원이고, 위 차량의 시세는 1,02만 원 ~ 1,700만 원이며 2021. 7. 부과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고, 위 차량에 대해서는 채권가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187,608,830원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채권가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C이 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 의사에 관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 이상, C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되며,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2. 5,200만 원을 E에게 대여하였고 E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반복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영희

별지